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제35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2 인

I. 일 시 : 2017년 4월 27일 16:00~18: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4월 17일)

II. 장 소 : 신라호텔 2층 팔선 샤론룸

III. 회의 참석자

o 참석 임원

- 이사(7인) : 서정돈 이사, 정규상 이사, 이태협 이사, 정유성 이사, 임대기 이사, 김병택 이사, 이현구 이사
- 감사(2인) : 김상항 감사, 김익래 감사

o 참석 교직원

- 송성진 기초처장, 김동욱 교무처장, 이동환 사무국장, 권민상 행정부원장, 박형주 과장

IV. 안건

1. '16학년 학교법인 결산
2. '16학년 학교 결산



3. 학교 고정자산 폐기 처분
4. '16학년 부속병원 결산
5. 병원 채권 대손상각 및 재산 처분
6. 교원 신규임용
7. 창업지원단 SKK Venture Capital 투자
8. 학교 부지 매입
9. 수용토지 추가 보상
10. 주요업무보고

V. 개회 선언 : 서정돈 이사장이 정관 제32조의 이사회 개최요건에 의거,
참석이사 數가 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VI. 전차 이사회 회의록 낭독

- 법인사무국장이 전차(제353차)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전차 회의록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이의사항 없이 통과하다.

VII.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

1. '16학년 학교법인 결산

- o 법인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김병택 이사의 발의,
이현구 이사의 동의, 정규상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16학년 학교법인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주요내용】

- '16학년 법인 총수입액은 1,689억원으로 前年 1,491억원 比
198억원 증가, 추경예산 1,680억 比 9억 증가하였음

※ 붙임 1 : '16학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결산



2. '16학년 학교 결산

- o 법인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태협 이사의 발의, 정유성 이사의 동의, 임대기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16학년 학교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주요내용】

- '16학년 학교 총수입액은 8,917억원으로 前年 8,613억원 比 304억원 증가, 추경예산 8,887억 比 30억 증가하였음

※ 붙임 2 : '16학년 성균관대학교 결산

3. 학교 고정자산 폐기 처분

- o 법인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현구 이사의 발의, 이태협 이사의 동의, 서정돈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학교 고정자산 폐기 처분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주요내용】

□ 폐기·처분내역

- 미상각 잔액 16백만원 폐기 처분

(백만원)

내역		수량	장부 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비고
기계기구	교육 및 연구용기자재	512점	2,992	2,977	15	폐기
집기비품	실험대, 책상, 의자 등	355점	113	112	1	폐기
도서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소계)	68권 1권 19권 (88권)	3	3	0	폐기
합계			3,108	3,092	16	



4. '16학년 부속병원 결산

- 병원 행정부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임대기 이사의 발의, 김병택 이사의 동의, 정유성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16학년 부속병원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주요내용】

- '16학년 부속병원 총수입액은 2,626억원으로 前年 2,812억원 比 186억원 감소, 추경예산 比 2억 감소하였음

※ 붙임 3 : '16학년 부속병원 결산

5. 병원 채권 대손상각 및 재산 처분

- 병원 행정부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정규상 이사의 발의, 김병택 이사의 동의, 이현구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병원 채권 대손상각 및 재산 처분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주요내용】

1) 대손 상각

□ 대손 사유

- '13년 발생한 원무팀 개인미수금에 대한 지속적인 미수 회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소멸 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대손처리 하고자 함

□ 의료미수금 대손처리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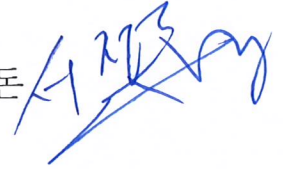
(건, 원)

		건 수	금 액	비 고
원무팀	입원개인미수	4	7,345,7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외래개인미수	79	1,074,900	
	합 계	83	8,420,610	



2017년 4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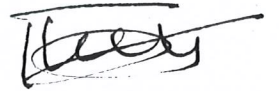
이 사 장 서 정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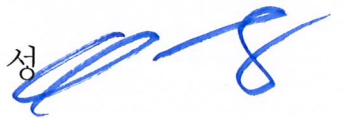
이 사 정 규 상



이 사 이 태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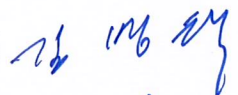
이 사 정 유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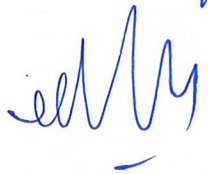
이 사 임 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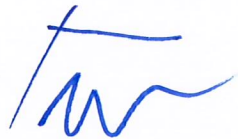
이 사 김 병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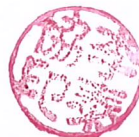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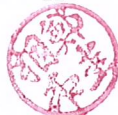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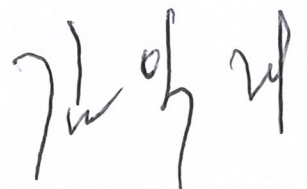
이 사 이 현 구



감 사 김 상 향



감 사 김 익 래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 포함)의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 포함)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 고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3. 부속병원 관련			지적사항 없음	
계				

붙임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17년 4월 28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감 사 김 상 향 (인) 

감 사 김 익 래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7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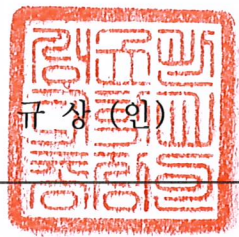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17년 4월 28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 사 장 서 정 돈 (인) 

피감사 기관장

2017년 4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총 장 정 규 상 (인) 

내부 감사 보고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8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감사 김 상 향

감사 김 의 래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과 장

성명 박 형 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일반업무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성균관대학교 교비회계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합산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와 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성균관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자금수지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기본금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한 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이 상 준



2017년 4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 의 확인사항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제표 의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6학년도	학교법인명	성균관대학	학교명	성균관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	-	-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	-	-		
3. 재산 취득 시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	-		
5. 이월금 구분(사고, 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	-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	-	-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별지 제2호 서식]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6학년도	학교법인명	성균관대학	학교명	성균관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법령	위반 금액 (단위: 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	-		
3. 재산 취득 시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		
5. 이월금 구분(사고, 명시, 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0)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